



의안번호	제 2016 - 1 호
보 고 연 월 일	2016. 1. 25. (제70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96차 전체 회의	1
1. 일시 · 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II. 제98차 전체 회의	1
1. 일시 · 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2
III.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 논의 결과	2
1. 권고 형량범위	2
2. 양형인자	3
3. 최종 양형기준 수정안	12
IV. 향후 일정	14

별첨	김현아,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김세종,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I”
	김현아,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추가)”
	김세종,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II”
	노수환, “교통사고범죄에 있어서 특별양형인자(감경)로서 피해자와 의 합의 외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서”

I. 제96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5. 11. 13.(금) 16:00 ~ 18:30
- 장소 : 강촌 엘리시안 리조트 세미나실

2. 참석자(13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현아, 김세종, 김혜경, 노수환, 박지선, 범현, 오기찬, 이진국, 최준혁, 황병헌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영역간 형량범위 중첩 및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설정 대상범죄 및 형량범위) 검토¹⁾
-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

II. 제98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5. 12. 14.(월) 16:00 ~ 18: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13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현아, 김세종, 김혜경, 노수환, 박지선, 범현, 오기찬, 이진국, 최준혁, 황병헌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1) 양형위원회 제69차 전체회의에서 보고하였음

3. 주요 안건

-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

III.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 논의결과²⁾

1. 권고 형량범위

-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일치

가. 일반 교통사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 6월 ^{8월}	4월 - 10월 ^{1년}	8월 - 1년6월 ^{2년}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0월 ^{1년}	8월 - 1년6월	1년 - 3년

(1)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및 기본영역
 - 통계분석 결과 나타난 양형실무(상한을 벗어나 선고되는 사건 다수 발생)를 반영하여 상한을 상향조정
- 가중영역
 - 법정형이 동일하고 죄질 및 평균형량이 유사한 과실치사상범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유형의 가중영역 상한(2년)과의 균형 및 통계분석 결과 나타난 양형실무(상한을 벗어나 선고되는 사건 일부 발생)를 고려하여 상향조정

(2)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 통계분석 결과 나타난 양형실무(상한을 벗어나 선고되는 사건 다수 발생)를 반영하여 상한을 상향조정

나. 교통사고 후 도주

2) 제96차 및 제98차 전체회의의 내용을 함께 정리하여 보고함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0월 <u>1년</u>	8월 - 1년6월	1년 - 3년
2	치상 후 유기 도주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3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4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1)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 통계분석 결과 나타난 양형실무(상한을 벗어나 선고되는 사건 다수 발생)를 반영하여 상한을 상향조정

2. 양형인자

가. 특별가중인자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난폭운전의 경우’를 추가하고, 그 정의규정에 ‘개방적 정의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 의견 일치

(1) 현행 양형기준

- ①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② 위험운전치사상(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③ 음주측정요구불응 ☞ 1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 특별가중인자에 해당
- 나머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 ☞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 특별가중인자에 해당

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사.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및 제8호를 제외한 나머지 단서

사유 중 어느 1개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난폭운전의 경우’ 추가

○ 아래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6. 2. 12.부터 시행됨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제151조의2(벌칙)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8.11.]

부칙 <제13458호, 2015.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3, 제73조제2항, 제93조제1항, 제151조의2, 제153조, 제1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중 일부는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중첩됨 ☞ 특별가중인자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음

○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중 나머지 경우도 죄질이나 가벌성 면에서 위 특별가중인자와 중첩되는 경우와 달리 평가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 ☞ ∴ 전체를 특별가중인자로 평가하여 추가함

(3) ‘개방적 정의규정’ 추가

- 일반적으로 양형인자의 정의규정에서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말미에 추가하여 명시적으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그 양형인자를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구체적 사안에서 양형인자의 합리적인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 일반가중인자로 취급되는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중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성이 특별가중인자에 이를 정도로 중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특별가중인자의 정의규정에 '개방적 정의규정'을 추가

(4) 양형인자 수정결과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정의규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및 제8호를 제외한 나머지 단서 사유 중 어느 1개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이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를 적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가중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를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 것인지 여부 ☞ 제외(다수의견)

- 현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정의규정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를 병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 특별가중인자의 적용에 있어 '교통사고 치사상 +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과 '위험운전 치사상(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 음주운전'의 경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음

(가) 다수의견 : 김세종, 김혜경, 범현, 이재권, 이진국, 최준혁, 황병헌(7인)

- '교통사고 치사상 +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사상 + 음주운전'을 차별할 합리적 이유 없음
- 일반적으로 '위험운전 치사상'이 인정되는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치상 + 음주운전'의 법정형 하한(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징역 6개월 이상, 0.2% 이상 : 징역 1년 이상)과 '위험운전 치상 + 음주운전'의 법정형 하한이 동일하고, '교통사고 치사 + 음주운전'의 경우(치상과 동일)에도 '위험운전 치사 + 음주운전'의 법정형 하한(징역 1년 이상)과 같거나 유사함 ☞ 법정형에 유의미한 차이 없음

- ‘교통사고 치사상 + 음주운전’의 경우도, ①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경우와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등 죄질이 중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동일한 경우 ‘교통사고 치사상 +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사상 + 음주운전’ 사이에 행위불법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평균형량도 유사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 중 ‘음주운전’과 ‘그밖의 단서 사유’는 과실의 중대성과 관련한 단일 양형인자로 취급함이 타당함

- 음주운전(8호)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1호)하여 중앙선을 침범(2호)한 경우,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은 모두 음주운전의 영향 아래 저질러진 하나의 과실로 볼 수 있으므로, ‘과실의 정도가 중’한 경우로서 행위불법 차원에서 단일한 가중인자로 처리함이 타당함
- 소수의견에 의할 경우, 위와 같은 사안에서 ‘교통사고 치사상 + 음주운전’의 경우는 특별가중인자가 1번 적용되나, ‘위험운전 치사상 +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가 2번(위험운전 치사상 1번 +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 1번) 적용되어, 행위불법이 이중으로 평가되고, ‘교통사고 치사상 + 음주운전’과의 불균형이 초래됨

(나) 소수의견 : 강수진, 김현아, 노수환, 박지선, 오기찬(5인)

- ‘교통사고 치사상’과 ‘위험운전 치사상’은 법정형에 있어 형종과 형량에 차이가 있음 ⇨ 같은 형량범위를 권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 ‘위험운전 치사상 +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치사상 + 음주운전’은 불법성에 차이가 있음
 - ‘교통사고 치사상 +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하나, ‘위험운전 치사상 + 음주운전’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를 처벌대

상으로 하므로 불법성에 차이가 있음

- '위험운전 치사상' 사건의 판결문 분석결과에 따르면, '위험운전 치사상'이 인정된 경우의 평균 혈중알콜농도는 0.182%인 것으로 확인됨

○ '위험운전 치사상 +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치사상 + 음주운전'의 실제 선고형에 차이가 있음

- '위험운전 치사상 + 음주운전'(치상 8.3월, 치사 13.9월)이 '교통사고 치사상 + 음주운전'(치상 7.9월, 치사 12.9월)보다 다소 높은 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확인됨

○ 특정범죄가중법의 위험운전치사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함을 이유로 2010. 3. 신설된 것으로 보다 가중처벌함이 입법취지에 부합함

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 것인지 여부

☞ 제외(다수의견)

○ 하나의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실체적 경합범 ☞ 형법 제38조에 가중처벌규정 있음 ☞ 양형기준에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하여 가중처벌(상한을 가중)
- 상상적 경합범 ☞ 형법 제40조에 가중처벌규정 없음 ☞ 양형기준 적용 제외

○ 양형기준 해설

○ 다수범죄 처리기준과 상상적 경합범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도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개별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중에서 높은 것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가) 다수의견 : 강수진, 김세종, 김혜경, 노수환, 박지선, 범현, 이재권, 이진국, 최준혁, 황병현(10인)

○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과정에서 피해자의 숫자는 가해자가 인식

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우연적 요소이므로,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행위책임주의원칙에 비추어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었고,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 확정 과정에서도 다수의견에 따라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하였음)

-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별도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실체적 경합범을 전제로 설정한 양형인자
- 방화범죄 양형기준 중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유형의 특별가중인자에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죄수관계에 대한 명확한 검토 없이 설정된 것으로 보임 ⇨ 양형기준안 설명자료에 아무런 설명 없음
-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서 ‘2인 이상’부터 ‘다수’로 볼 경우 형량 범위에 불균형이 초래되고(2인, 10인, 50인, 100인 등을 동일 취급),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를 ‘2인’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 정의하는 것 또한 그 기준을 합리적이고도 명확하게 정하기 곤란함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여 가중영역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모두 가중하는 것으로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상한만 가중되는 ‘실체적 경합범’보다 더 중하게 가중하는 것이어서 형법상 가중처벌 체계에 반하고, 양형기준 체계에도 부합하지 아니함
-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상호 특별가중인자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원칙으로 돌아가 어느 범죄 양형기준도 적용되지 아니함 ⇨ 사실상 무용한 인자 설정

(나) 소수의견 ⇨ 김현아, 오기찬(2인)

- 사망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1인인 경우보다 결과불법이 더욱 크

게 평가될 것임

- 현행 양형실무도 피해자가 2인 이상일 때 비교적 높은 형을 선고하고 있음
- ‘양형기준 해설’은 상상적 경합범의 일반적인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양형기준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님(상상적 경합범 사이에 법정형이 같은 경우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데 장애 없음)
- 방화, 공무집행방해 범죄군의 양형기준에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에서도 상호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 공무집행방해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피해자 2인 이상 치사의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고, 치사와 치상 피해자가 섞여 있는 경우나 2인 이상 치상의 경우는 일반가중인자로 설정

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일반감경인자로 수정할 것인지 여부 ➡ 특별감경인자로 유지(다수의견)

(가) 다수의견 : 강수진, 김세종, 범현, 이재권, 이진국, 최준혁, 황병헌(7인)

-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당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특별감경인자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고,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 확정 과정에서도 다수의견에 따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였음)
- 살인, 성범죄(사망 결과) 등 15개 범죄군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고 있음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합의의 상대방인 유족과 인적 대면관계

가 형성되지 아니한 탓에 최대한 노력에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에 이르러야 인정되는 점에서 ‘상당 금액 공탁’과 구별되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노력이나 피해회복의 정도 면에서 합의에 이른 경우와 별다른 차이 없음

(나) 소수의견 : 김현아, 김혜경, 노수환, 박지선, 오기찬(5인)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는 것은 법감정에 부합하지 아니함
- 일반감경인자 중 ‘상당 금액 공탁’과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는 점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함) 등을 참작할 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상당 금액 공탁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합의에 이른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고, 특히 개인의 생명, 신체, 인격, 명예 등을 침해하는 범죄군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감정)를 중하게 고려하여야 함
- 다수의견에 따를 경우, 사망한 피해자 유족이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함
- ‘합의’한 경우와 ‘진지한 노력 끝에 공탁’한 경우는 피해자가 받는 경제적인 이득이나, 피고인이 입는 경제적 손실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음

마.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서 ‘사고 후 구호조치’를 일반감경인자에서 삭제** ➡ 의견 일치

-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에서 ‘사고 후 구호 미조치’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 균형을 고려하여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서도

일반감경인자인 ‘사고 후 구호조치’를 삭제

3. 최종 양형기준 수정안

1. 일반 교통사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 6월8월	4월 - 10월1년	8월 - 1년6월2년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0월1년	8월 - 1년6월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유형)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u>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u>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 /기타	○ 사고 후 구호조치 ○ 상당 금액 공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0월 1년	8월 - 1년6월	1년 - 3년
2	치상 후 유기 도주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3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4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유형)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 /기타	○ 상당 금액 공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교통사고 후 유기 도주인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u>또는 난폭운전의 경우</u>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 처벌불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상당 금액 공탁 ○ <u>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일반 교통사고에 한정)</u>

IV.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100차 전체회의는 추후 개최하기로 함